

서울특별시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우형찬 의원 발의)

의안 번호	2719
----------	------

발 의 년 월 일: 2025년 05월 23일

발 의 자: 우형찬 의원(1명)

찬 성 자: 김동욱, 김성준, 김원태,
박승진, 봉양순, 송도호,
유정희, 이영실, 이용균,
이원형, 이종태, 이종환,
임규호, 정준호, 황철규
의원(15명)

1. 제안이유

- 현행 조례는 현장체험학습의 안전관리 및 지원 대상을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로 한정하여 「유아교육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이 포함되지 않는 한계가 있어, 유치원도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및 지원의 대상에 포함시켜 조례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여 서울시 교육기관의 학생들이 동등한 안전관리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“학교”의 정의에 서울특별시에 소재하는 「유아교육법」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유치원을 추가함.(안 제2조제1호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
- 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 (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)
- 다. 기타 : 신 구조문 대비표

서울특별시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및 지원에
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건전한”을 “건전한”으로 한다.

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1. “학교”란 서울특별시에 소재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.

가. 「유아교육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

나.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현장체험 학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의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교육활동을 통해 소질 및 적성을 발견하고 창의성 함양을 도모하여 학생의 자율적이고 <u>건전한</u> 성장 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	제1조(목적)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 <u>건전한</u> ----- -----.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 1. “학교”란 서울특별시에 소재하는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.	제2조(정의) ----- -----. 1. “학교”란 서울특별시에 소재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. 가. 「유아교육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나.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
2. ~ 4. (생략)	2. ~ 4. (현행과 같음)

서울특별시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

일부개정조례안 비대상 사유서

1. 판단 근거

- 서울특별시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 제1조의 자구를 수정 (건전한 → 건전한)하고, 제2조제1호의 목을 신설하여 관리 및 지원대상을 유치원까지 확대하여 서울시 교육기관의 학생들이 동등한 안전관리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임
- 신설 및 수정조문 검토결과, 서울특별시 소재의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및 지원 대상에 유치원까지 포함시키는 경우, 서울특별시 교육청에서 예산을 기편성(안전총괄담당관, 학교안전팀)하여 시행하고 있어, 별도의 비용을 수반하지 않으므로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함

2. 작성자

시의회사무처 재정분석담당관

담 당 관 주 병 준

추계세제팀장 김 중 헌

추 계 분 석 관 김 진 형

☎ 02-2180-7954

e-mail : kjh0816@seoul.go.kr

※ 이 서류는 의안 발의 참고 자료입니다.